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범죄경력자 정보조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측량업 등록, 지명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 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41조)

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6호, 2017. 10. 24.) 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62조)

다.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안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등을 개선(안 제87조, 제88조의2)

마.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조회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 등록·취소 등 업무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4조의2)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별표1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임,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본문 중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을 “활용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장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이 승인을”을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및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승인신청”을 “따라 신청”으로, “심사”를 “확인하여 자료제공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자료를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을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5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지원
 4. 연속지적도를 이·활용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과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2. 지적도·임야도에 대한 토지이동과 오류사항 정비 결과의 연속지적도 반영
3.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련정보에 대한 오류정비 및 정비결과 검증 등 연속지적도 품질관리

③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련정보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2.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련정보의 정비결과 검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연속지적도의 관리, 정비 또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이하 “연속지적도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90조의2제4항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9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2. 대표자의 성명

3. 위탁기간

4. 위탁업무 등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연속지적도 위탁업무의 점검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에게 위탁한 업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88조의2제2호 중 “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만 해당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별표13 제목중 “제99조의2”를 “제10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 9.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및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생략) 1. (생략)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 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 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 원 이상 ② (생략)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u>활용에</u> <u>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u> <u>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u> <u>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u>장이 승</u> <u>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u> <u>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u> <u>아니할 수 있다.</u>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활용 신</u> <u>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u> <u>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u> <u>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u> ----- ----- <u>장, 그 소속 기관의 장</u> <u>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u> <u>하는 경우 및 법 제76조제3항에</u> <u>따라</u> ----- ----- ---.
④ 제3항에 <u>따른 승인신청을 받</u>	④ ----- <u>따라 신청</u> -----

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 확인하여 자료제공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자료를 제공-----.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 -----

-----.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
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지원

4. 연속지적도를 이·활용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과 연
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
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
해 관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
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2. 지적도·임야도에 대한 토지
이동과 오류사항 정비 결과의
연속지적도 반영

3.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
련정보에 대한 오류정비 및 정

<신 설>

비결과 검증 등 연속지적도 품질관리

③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련정보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2. 연속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관련정보의 정비결과 검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3(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연속지적도의 관리, 정비 또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이하 “연속지적도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90조의2제4항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9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2. 대표자의 성명
3. 위탁기간

<신 설>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4. 위탁업무 등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연속지적도 위탁업무의 점검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연속지적도 위탁기관에게 위탁한 업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⑥ ~ ⑨ (생략)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생략)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
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으로 할 것

3. ~ 5. (생략)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 . 다만, 「청년기본
법」에 따른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도 불구하고 지리, 역사, 국문
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연구경력이 1년 이
상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
회의 구성 등) -----

1. (현행과 같음)

2. -----

----- 과장급 이상 -----

3. ~ 5.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만 해당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3480